

심의결과 위안패로가결

위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지	제 의 자
39	19	1984. 9. 6.	증 재 최 청 탁

의 안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: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불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: 한국은행법 제 7조, 제 73조
법규조항

제의취지 : 사치성 유증 「서비스」 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
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제한된 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
흐름을 촉진하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참고사항 :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 7조

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는 영외원화를 둔다.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
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
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
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
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(이 하 생략)

한국은행법 제 73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인정할 때에는
한국은행은 제할인, 할인을 받고자 또는 담보로서
제시한 신용증권의 적격성 여하에 불구하고 금융
기관의 용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신청한 금융기관이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
은행의 여신에 과도히 의뢰하여 왔거나 또는
불건전한 대출방침과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
인정할 때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7항 제 2호와 같이 인정
되는 금융기관에 허용한 여신에 대하여 할인으로
이자율 인상할 수 있다.

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(안)

현행	개 정 (안)	비 고												
(별표 1) 여 신 금 지 부 문 1. 토지의 매입 다만, 서민주택건설용, 6개월 이내에 착공될 공장 건설용, 실수요자의 농지매입용 및 비영리법인 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사택건설용은 제외한다. 2. 세대당 170㎡를 초과하는 주택(아파트 포함) 의 건설 또는 매입 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</th><th>업 종 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904 중 (신 설)</td><td>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</td></tr> <tr> <td>6312</td><td>주 점 업 (63129업종 제외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	업 종 명	3904 중 (신 설)	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	6312	주 점 업 (63129업종 제외)	(별표 1) 여 신 금 지 부 문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</th><th>업 종 명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904 중 6311 중</td><td>(현행과 같음) 대중음식점 (단, 건평 330㎡ 또는 대지 660㎡초과업체)</td></tr> <tr> <td>6312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	업 종 명	3904 중 6311 중	(현행과 같음) 대중음식점 (단, 건평 330㎡ 또는 대지 660㎡초과업체)	6312	(현행과 같음)	○ 대형갈비집, 중국음식점등 호화대형 음식점이 대중음식점으로 분류됨으로써 현재 여신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○ 최근 문제가 된 「룸.싸롱」 「나이트.클럽」 「카바레」 등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음식점이 포함되며 현재도 여신 금지 대상임.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	업 종 명													
3904 중 (신 설)	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													
6312	주 점 업 (63129업종 제외)													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	업 종 명													
3904 중 6311 중	(현행과 같음) 대중음식점 (단, 건평 330㎡ 또는 대지 660㎡초과업체)													
6312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

-3-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63132 (신설)	다	63132		(현행과 같음)		
	방	632 중		「호텔」업(관광「호텔」제외)		
	업			여관업(음등급 제외)		
81026	전	81026		(현행과 같음)		
83031	부	83031		(:)		
(신설)	동	9491 중		헬스클럽		
9493 중	산	9493 중		(현행과 같음)		
94960	중	94960		(:)		
9591 중	개	9591 중		(:)		
95994	업	95994		(:)		
95999 중	「댄스홀, 「댄스」고습소	95999 중		(:)		
	도박장 운영업					
	사치성이발소, 미장원					
	욕탕업(대중탕 제외)					
	비의료성격의 자영안마소					
		부	칙			
		이 규정은 1984. 9.6.부터 시행한다.				

° 관광「호텔」을 제외한「호텔」및 감등급 여관등 고급 숙박업소를 여신금지대상에 추가
- 최근 문제가 된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여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「호텔」과 함께 감등급 여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(숙박업법상 감등급 여관은 중앙난방식으로 욕실부설 객실이 1/3 이상)

° 사치성 목욕탕확한「헬스클럽」도 규제대상에 추가

° 최근 문제가 된 사치성이발소,「사우나」탕, 안마 시설소 등이 포함되며 현재도 여신금지대상임.